



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 구현

2014년 5월 9일(금) 배포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14년 5월 12일(월) 오전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최무진(044-200-4484)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11일(일) 낮 12시

담당: 김성균 서기관(044-200-4489)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

공정위, 본사 -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고시 제정 ·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밀어내기 등 본사 -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5월 12일부터 시행함.

* 본사 - 대리점 간의 거래는 매입 거래(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 위·수탁 거래(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거래 유형들을 ‘계속적 재판매 거래’라 하여 고시 명칭에도 이 용어를 사용함.

1. 추진 배경

-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 -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가 문제되면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필요가 제기됨.
- 본사 -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관련 심결례**에서 드러난 여러 불공정 행위 세부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뒷받침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함.

* 8개 업종 · 23개 업체 대상('13년 6월 ~ 8월)

** 남양유업('13년 7월) 및 배상면주가('13년 9월)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림.

2. 주요 내용

◇ 고시에 규정된 행위 유형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로 금지됨.**

- ① (구입 강제 금지) 판매업자(통상 대리점 사업자)가 청약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통상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임.
 - 합리적 이유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임.
- ②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 · 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임.
 -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임.
- ③ (판매목표 강제 금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 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
- ④ (불이익 제공 금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임.
 - 공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거나, 운송비를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을 말함.
 -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해당됨.
 - 고시에 위반한 행위를 공정위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임.

④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임.

-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해당됨.
-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됨.

⑤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명,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에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임.

3.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자들이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보복조치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14. 5. 2)과 더불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
 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대상 간담회(5월 중) 등을 통해 고시의 내용을
 교육·홍보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해 나갈 계획임.

※ **별첨: 고시 내용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p>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p>	<p>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p>	 	 <p>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방·공유·소통·협력</p>
--	--	---	---

별첨

고시 내용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4-6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
 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
 매거래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
 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
 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서 판단한다.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3. 판매업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점포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반품”이란 판매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공급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4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2.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제5조 (경제상이익의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4.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는 반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2.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③ 공급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공급업자는 기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공급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당 판매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 행사에 판매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해임·근무지역·근무조건이나 판매원의 계약체결·해지·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수탁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
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 재판매거래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